

## 한국 민간경비 시장의 과제와 활성화 도입방안

### A Research on Extension Device of Korea Private Security Market

박 준 석\*

<목 차>

I. 서 론
II. 선진국의 민간조사원 제도와 민간경비산업의 상호협력 및 도입방안
III. 시큐리티 컨설팅업의 민간경비 도입방안
IV. 한국경비업의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공통점에 대한 일원화 방안
V. 결 론

#### <요 약>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민간경비와 접목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경호법, 대테러법, 대통령 경호실법에 관련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보안과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접목을 통한 민간경비의 다양성과 세분화, 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큐리티 컨설팅 즉, 통합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경비업체의 투자와 전문분야의 양성 및 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성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목적, 의무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시민,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 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경비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경비협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처능력이 권력의 힘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군 등의 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민간조사업, 민간경비산업, 경비업법, 경비협회, 자격증제도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 I. 서 론

지난 2월 승례문 방화사건으로 국가 주요시설물과 문화재 등에 대한 경비문제가 부각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고유한 책무지만 사회가 다양해지고 국민의 치안요구가 증가하면서 민간경비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 경비업체를 제외하고 상당수 경비업체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 업체는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이 민간경비산업의 역할 증대의 필요성 및 사회학적 배경에서의 범주의 다양화는 물질적 풍요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시민안전에 대한 위협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가족의 해체현상, 생활수준의 계층화, 노사갈등, 체제불만 등으로 오히려 사회범죄는 증폭되어 나타났다. 인간의 합리적 사고가 비이성적인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안전불감증과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위기관리능력”의 제도적 부재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범죄구역의 광역화와 범죄대상의 무차별성으로 표출되었으며 인재에 의한 대형사고를 빈번하게 유발하였다. 이로 인해 시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은 위협에 노출되거나 안전으로부터 방치되어 어떠한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일상의 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오늘날 각종 범죄는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기존 정부의 형사정책적 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국가 공권력 만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경비의 한계의 경찰의 역할은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국가를 가족이 확대된 영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밀접하게 보았으며, 갑오개혁 이후 독일식 대륙법계의 경찰제도를 채택해온 이래 개인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존성이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수립 이후 일관되게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경찰관의 일반적인 활동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

\* 내일신문 2008년 3월 5일자 20면.

\*\* 공배완, 「민간 경비학개론」, 한울출판사, 2004, p. 253.

\*\*\* 경찰청, 경찰백서, 2003, pp.203~207.

\*\*\*\* 서진석, “민간경비의 개념정의와 새로운 경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세기 질서행정, 성석 정진환교수 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2002, p.331.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의 직권도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하되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의 직무범위는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직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주된 역할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예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찰의 방법활동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일상업무에 속한다.

그러나 경찰방법능력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인력 부족현상이다. 경찰인력 부족현상의 원인을 한가지로 특정 지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먼저 경찰인력의 증가보다 범죄증가율이 2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경찰인력의 부족현상을 간접적으로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한이 대치한 특수상황 하에서는 경찰인력이 시국치안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생치안에 동원되는 경찰인력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둘째, 경찰 방법장비 부족 및 노후화를 들 수 있다. 경찰관 1일 평균 근무시간이 예전에 비하여 단축되었지만 아직도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경찰이 효율적인 방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무자동화기기의 보급 부족과 행정사무의 전산화 미흡으로 업무처리 능력과 활용이 저하되고 있고, 방법순찰차량 등 기동장비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민생치안체제 확립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통신장비의 성능 불량 및 노후화로 효율적인 방법업무 연락체계 구축과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외근 개인장비 보급부족으로 초동범죄 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체상의 위험 또한 뒤따르고 있는 형편이다.

셋째, 경찰 민생치안부서 근무기피현상이다. 경찰 민생치안 부서의 업무량 과다 및 인사·복무상 불리한 근무여건 등으로 근무기피현상이 만연되어 있고, 너무 잦은 비상과 출·퇴근개념의 실종으로 대부분의 경찰은 만성적인 피로의 누적으로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있으며, 그리고 민생치안 담당 경찰의 안전 및 신분보장 미흡으로 사기 또한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넷째, 타부처간의 협조업무의 증가다. 경찰의 고유업무가 아닌 타부서 협조업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찰의 민생치안 고유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다섯째,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이다. 민생치안 문제해결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경찰과 주민들간의 방법활동을 위한 협조가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불신 등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의 이유로 주민과 경찰과의 관계개선이나 범죄발생시 신고 등의 협조가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민간안전의식의 증대도 중요하다. 시민의 일상생활이 제도적 안전장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모든 형태의 범죄로부터 신변의 위협이 노출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사적(私的)소유의 재산과 개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안전보장이 제도적 안전장치의 부재 등으로 더 이상 공공기관에 의존될 수 없다고 하는 현실과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개인안전의식의 증대가 민간경비의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사회발전의 단계에서 본다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원시적 형태의 발전과정에 있는 것이 민간경비의 발전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는 민간안전의식의 증대욕구에 비해 공급체계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민간경비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시민의 삶에 대한 안전의식의 증대는 특히 범죄와 관련하여 개개인의 자경주의(Vigilantism)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경찰의 역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삶에 대한 안전의식의 증대는 결과적으로 치안서비스에 대한 인식변화인 것이다. 따라서 치안활동이 갖는 공적 성격 때문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논리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피상적인 접근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민간부문이 이러한 한계를 안고 있다면, 오늘날 날로 관심이 늘고 있는 치안서비스 공공생산에 대한 논의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민간경비가 공공경찰의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의식 증대 및 이의 구체화과정은 기존 경찰서비스에 대한 인식전환을 가져다 주고 있다. 즉 경찰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확보 등과 관련된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이나 여타 집단과 기업과 같은 조직 등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다주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은 경비업법 제 2조에 정의한 바와 같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다섯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 시장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비산업영역의 확대는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직행법, 대통령 경호실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외에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안으로는 민간조사원 법안, 대테러 법안, 요인경호 법안 등의 법

\*\* 오선경, "민간경비 역할증대에 따른 인력관리 효율과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 2000, pp.17~19

\*\*\* 공배완, 「민간 경비학개론」, 한울출판사, 2004, p. 253.

\*\*\*\* 이윤근,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1996, p. 12.

안이 앞으로 통과 될 경우에 민간경비 보안시장의 확대는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내용으로서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공통점을 일원화해야 한다.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원적인 운영 때문에 민간경호·경비업 업무수행에 비효율적인 문제에서 알아보았듯이 이제는 더 이상 이들 양 법이 독자적으로 분리운영 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양 법의 분리운영에 따른 결과로 청원경찰과 민간경호·경비의 교육훈련의 통일을 기하기가 어렵고 경비업법에 있어서 지위체계상의 통일성을 만들기가 어려우며 경비원의 사기 문제와 직결되는 보수의 적정화를 이룩하기 또한 어렵다. 특히 특수경비원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이중적인 신분구조 때문에 전체민간경비원들의 신분상의 통일이 곤란하며 청원경찰들의 초기 사용에 따른 훈련부족으로 직무수행상의 능력부족 문제로 내세워 또 다른 형태의 민간경호·경비 조직을 결성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제 효율적인 운영상의 방해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유사한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범위를 제안하고 개정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선진국과 비교하여 민간경비시장의 확대방안에 대한 선진국의 민간경비 시장의 범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민간경비 영역의 확대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II. 선진국의 민간 조사원 제도와 민간경비산업의 상호협력 및 도입방안

### 1. 미국

미국의 경우 재산보호, 개인의 안전확보, 정보수집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

첫째, 재산보호는 개인이나 기업의 시설, 설비, 기타 재산을 범죄나 화재 또는 여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에의 접근을 규제하고 차단하기 위한 출입감시, 억제 고객이나 내부직원의 통제, 사고 방지, 시설내의 안전확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등의 임무를 말한다. 이러한 일은 주로 제복차림의 '경비원'에 의해 수행되며, 민간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 허경미,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제", 수사연구, 1998년 11월호, p.53.

둘째, 개인의 안전확보는 고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주로 기업인이거나 연예인, 운동선수 등 대중과 많은 접촉을 하거나 대중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로서 '보디가드', '에스코트'로 불린다.

셋째, 정보수집은 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행방불명자의 수색, 보험회사의 지급업무를 위한 조사, 배우자의 탈선행위 발견, 직원의 비행조사 등이 민간경호·경비업의 업무영역이며, 최근에는 시장조사, 기업의 회계감사, 문서감정,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는 감식활동을 대행해주는 경호·경비업체도 있다.

미국의 민간경호·경비원의 직업윤리강령을 보면 민간경비원은 범죄의 예방과 감소에 있어 민간경비가 수행하는 중요한 공헌을 인식하면서 민간경호·경비 고용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첫째, 본인 역할의 책임을 인정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생명과 재산의 보호, 고용주의 기업 또는 자신에게 할당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감소 그리고 모든 사람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한다.

둘째, 정직과 성실로서 일하며 나의 경호·경비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도덕적 원칙을 준수한다.

셋째, 나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근면, 그리고 신뢰성을 견지할 것이며 항상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정책 그리고 집행과정을 고양할 것이다.

넷째, 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감정, 편견, 적대감 그리고 우정 등에 치우치지 않고 진실, 정확 그리고 인내심을 지켜나갈 것이다.

다섯째, 법 혹은 고용주나 고객의 규칙에 대한 어떠한 위반도 지체 없이 나의 감독자에게 보고할 것이다.

여섯째, 책임 있는 경찰조직이나 정부조직의 관할권내에 있는 일에 관해서는 그들과 협력할 것이다.

일곱째, 고용주의 동의나 인정이 없이는 어떠한 보상, 임무, 선물 또는 다른 혜택도 받지 않겠다.

여덟째, 항상 전문가답게 활동하며 나의 임무를 나 자신, 고용주 그리고 민간경호·경비원의 신뢰성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로 수행할 것이다.

아홉째, 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추구함으로써 나의 업무수행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나의 경호·경비업무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 김두현, 「경호학」, 서울 : 공안행정연구원, 1996, p.56~57.

\*\* 오선경, 「민간경비 역할증대에 따른 인력관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pp.8~11.

1) 미국의 민간조사원 제도

미국은 각 주마다 민간조사업의 정의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2-1> 펜실베니아주의 업무범위

①	미국 연방이나 주 혹은 미국에 속한 영토에 대해 발생되거나 위협이 되는 범죄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
②	특정 개인이나 단체, 협회, 조직, 사회분야, 동료, 법인 등의 확인, 습관, 제휴관계, 거래, 평판, 특성 등에 대한 조사
③	증인 및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 조사
④	실종자의 소재파악
⑤	분실 및 도난재산의 회수 및 소재확인
⑥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책임의 원인과 근거등의 확인
⑦	특정인, 특정조직, 사회, 협회, 법인, 직원 등과 관련된 사실 확인
⑧	파업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 사람이나 그 당시 고용주에 대한 사실 관계조사
⑨	종업원, 관리자, 계약자, 하도급자들의 행위, 정직, 능력, 충성 또는 활동에 관한 사실조사
⑩	형사재판, 민사재판시 조사위원회, 판정위원회, 중재위원회의 판정 및 조정 전에 사용 될 증거자료의 제공

선진국의 민간조사원 제도의 영역

자료 : Robert D. McCrie(2001). Security Operations Management. MA :Butterworth Heinemann . pp.271-272.\*\*\*

2. 일본

2006년 5월 통과된 탐정업법상의 탐정업의 업무범위는 구체적인 항목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조사업무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한국의 민간조사제도와 민간경비산업의 상호관련 및 도입방안을 위해서 변호사법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신용조사업법과의 관계, 헌법, 형법 및 기타 법률과의 관계 등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협의적인 영역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산업으로써 이러한 민간조사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자로서는 민사사건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관련업무 특히 민사사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 수집, 조사(보험, 의료, 경비) 등이 좋은 예라 하겠다.

\*\*\* 이상원.한국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방향.2007. p.6

<표 2-2> 일본탐정의 업무범위

업무영역	업 무 내 용	
행동조사	미행·잠복 등에 의한 조사대상자의 행동이나 행선지 파악	
	불륜조사	-배우자, 애인의 이성관계등에 관한 문제의 조사와 증거 확보 -특정인물의 행동이나 행선지, 교우관계 파악
	소행조사	-외근 영업사원들의 외부활동을 추적, 확인하여 객관적인 평가 -기업의 위기관리에 관한 종업원의 비밀누설이나 금품 등의수수 -근무시간 외의 취업유무 확인 -횡령 등의 조기발견과 증거취득 -산업폐기물 등을 불법 투기하는 차량이나 인물, 회사의 적발
사람찾기 및 소재파악	-가출인·실종자·첫사랑·옛 친구·은인·원거리 특정인 등의 소재 파악 -특정인의 근무처 확인 등	
신용조사	개인신용조사	-특정인의 자산이나 부채 등의 조사
	기업신용조사	-거래처의 신용도, 현재 재무상태, 부채회수 리스크 등의 조사
기타 배경조사	인연, 적성조사	-교제상대, 애인, 결혼상대자에 대해 우려사항 및 신상조사 -채용 예정자나 인사이동 등의 직업에 관한 조사
	사생활보호 조사	-도청,몰래카메라 등의 발견 및 조사 -수상한 인물, 스토키에 대한 제 문제 해결 -방법 컨설팅 등 -컴퓨터나 네트워크의 보안문제의 해결
증거조사	소송시에 사용될 재판자료 수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시</li> <li>* 조정(채무청구의 경우)</li> <li>* 재산의 소재파악, 추적</li> <li>* 컨설팅</li> <li>* 사이버 범죄</li> <li>* 직원의 경력조사</li> <li>* 화재사건</li> <li>* 명령</li> <li>* 보험청구 또는 반대소송청구</li> <li>* 공공기록조사(인구통계, 재산, 신용, 범죄, 채무, 교육)</li> <li>* 사고(항공기, 차량, 건설, 산업, 개인 등)</li> <li>* 독점금지활동</li> <li>* 경쟁적인 정보수집</li> <li>* 비밀활동</li> <li>* 근무지 위반 등</li> <li>* 과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자 소재파악</li> <li>* 인수 및 합병</li> <li>* 개인적 손해</li> <li>* 거짓말 탐지기 조사</li> <li>* 재산 및 순수가액청구</li> <li>* 성희롱</li> <li>* 재판준비</li> <li>* 근로자의 배상</li> <li>* 유용(타인의 재산에 대한 통제)</li> <li>* 계약위반(사실과 가능한 손해의 결정)</li> <li>* 산업 스파이</li> <li>* 사기(부정행위)</li> <li>* 부족 및 감소목록조사</li> <li>* 해운업 조사</li> <li>* 특허권 조사</li> <li>* 채용조사</li> </ul>
-----------------------------------------------------------------------------------------------------------------------------------------------------------------------------------------------------------------------------------------------------------------------------------------------------------------------------------------------------------------------------------------------	--------------------------------------------------------------------------------------------------------------------------------------------------------------------------------------------------------------------------------------------------------------------------------------------------------------------------------------------------------------------------------

자료 : 강영숙(2006) “일본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 8호에서 재인용



### III. 시큐리티 컨설팅업의 민간경비 도입방안

#### 1. 환경범죄학의 대두와 시큐리티 컨설팅

환경범죄학이란 건물이나 지역 등 환경이 가지고 있는 범죄유발요인을 분석하여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고자 방법환경의 실제관리를 제기한 새로운 범죄학이론이다.

이 이론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통한 범죄예방의 개념에서 접근으로, 해당 지역의 방어공간의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검거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으로 불리어진다.\*\*\*\* CPTED의 기본 이념은 Newman의 “방어공간”에서 유래되었으며,\*\*\*\*\* 영미를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주목을 받아오다가, 1990년에는 범죄예방론의 대두를 배경으로 급속하게 힘을 얻고 있다.\*

환경범죄학이 제안하는 범죄예방책은 아직 시행단계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최근에는 종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국내외의 동향을 보면 범죄예방론에서 제시한 대책이 일상생활에 반영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한 범죄방지라는 취지를 도입한 도시계획이 추진되는가 하면, 비교적 큰 관공서나 기업에서는 건물의 설계단계부터 출입통지, CCTV, 화재, 도난방지, 환경제어 등의 다양한 시스템을 결집하여 전체적인 시큐리티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 시큐리티 시스템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큐리티 컨설팅과 시큐리티 컨설턴트가 새로운 서비스

\*\*\*\* S. P. Lab, Crime Prevention—Approaches, Practices and Evaluations, Anderson Publishing Co., 1992, p.11.

\*\*\*\*\* 전영실, “각국의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3-11, 1994, p.27.

\* 「환경범죄학」이라는 용어는 1981년 캐나다의 범죄학자 브랜딩검 부처의 환경범죄학이라는 저서로부터 명명된 것이나, 오늘날에는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 상황적 범죄예방을 포괄하는 학파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환경범죄학의 제1인자인 클라크(Ronald Clark)는 1992년 「상황적 범죄예방 : 성공사례의 케이스 스터디」에서 12가지 범죄예방책을 범행의 곤란화를 증가시키는 대책(표적의 강화, 시설의 출입제한, 범죄자의 이동배치, 범죄촉진 수단의 제한), 범행에 따른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대책(입구/출구의 규제, 정형적인 감시, 종업원에 의한 감시, 자연스러운 감시), 범죄의 보수를 감소시키는 대책(표적의 제거, 소유물의 식별, 범죄유발요인의 제거, 규칙의 설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업과 전문직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2. 지식기반 산업과 시큐리티 컨설팅

세계는 지금 부와 힘의 원천인 자본에서 창출되는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을 기반으로 창출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1992)는 새로운 사회에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사회를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라고 규정하고, 새로운 경제에 있어서 지식은 단순히 전통적인 생산요소로서의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하나의 자원이라기보다 오직 하나의 '의미 있는 자원'이라고 말하였다.\*\*

미국 민간 연구 및 데이터산업회사인 Freedonia\*\*\*\*의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경호·경비업에 있어서 컨설팅, 사설탐정, 시스템 통합과 기타 서비스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4년 129억달러로 매년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시큐리티 산업은 새로운 급성장의 계기를 맞았다. 각종 테러에 대한 위협으로 미국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하고 경호실과 해안경비대, 이민국 등 22개 기관의 18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나 공항 경비 등 갑자기 늘어난 테러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시큐리티 업체들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원됐고, 시큐리티 산업의 매출과 인력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그 예로 시큐리티 대상에 따라 교육시설 경비, 금융시설 경비, 게임 및 도박시설 경비, 정부 산업체 경비, 보건의료시설 경비, 정보시스템 시설 경비, 숙박시설 경비, 생산시설 경비, 도소매 시설 경비, 교통시설 경비 등으로 세분화, 통합화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큐리티 컨설팅 서비스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으로 테러리즘과 인질협상, 컴퓨터범죄와 산업스파이 같은 비전통적인 범죄의 발생으로 인해 기업 또는 개인의 보안의식의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수요가 예측된다.

독일 및 유럽의 민간경비산업 영역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 빌딩과 공장, 분석/상담/전략/교육과 훈련, 출입문 및 안내서비스, 화재에

\*\*\* Drucker, Peter "The New Society of Organiz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September-October, 1992, pp. 95~104.

\*\*\*\* Freedonia Group은 연구 및 데이터 베이스산업을 선도하는 회사로, 1985년 설립이후, 이 회사가 건축, 화학, 의사소통, 보건, 상품 포장, 의약, 성형, 안전과 같은 많은 산업과 관련한 1,500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다. 산업전망에 관한 분석은 물론 한나라의 경제전망, 공급과 수요예측, 제품과 시장의 예상, 기회와 위협, 경쟁적인 전략, 성장에 영향을 주는 국제적인 경향과 요인, 시장에 대한 예상과 점유율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출간하고 있는 국제경제 리서치 회사이다.(http://www.freedoniagroup.com/)

\*\*\*\*\* 임준태 외 7명. 비교시큐리티 제도론. 2007. 진영사. p.347

방, 공장 및 사무실의 방화장벽 설치, 구역순찰, 신변경호, 문서수송 및 전달, 심부름, 철도건설현장을 위한 경비소 운영, 환경 및 작업장보호, 비상조치서비스, 비상벨 추적, 기계 설비를 이용한 원격안전관리, 공정한 거래 및 박물관보안, 행사 및 회의 서비스, 공공교통의 보호 및 경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표 3-1> 세계 민간경비산업의 분야별 매출액

(단위 : \$억)

구분	1989	1994	1999	2004	2009
총 액	297.43	444.89	662.02	991.30	1496.95
경호서비스	156.3	222.21	308.48	431.86	612.29
기계경비	81.71	127.05	192.37	294.11	452.91
호송경비	27.54	42.07	64.69	95.51	139.27
민간교도소	0.85	3.40	17.0	40.85	83.60
컨설팅 & 기타	31.03	50.17	79.48	128.98	208.88

자료 : Freedonia Group, Inc. PRIVATE SECURITY SERVICES TO 2004.

시큐리티산업에서 컨설팅은 가장 흥미진진하고도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실제로 시큐리티 컨설팅은 시큐리티 경영 이래로 가장 새롭고 매력적인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 때 중간 간부층(senior positions)이 시큐리티 산업 내의 가장 중요시되는 인적구성원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관리자 중심의 조직운영에서 이제는 또 다른 도전적인 대안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시큐리티 컨설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취약성과 위험진단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원하는 많은 회사들은 민간경비부문에서 그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시큐리티 전문가를 필요로 하였다.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시큐리티 컨설턴트도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자문하는 전문가들이며,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고객에게 조언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고수익을 올림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기반사업인 것이다.

Hallcrest Report II에 의하면 시큐리티 컨설턴트의 수요가 2000년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비스부문은 일반적으로 기계관련 업무, 안전관리, 인력경비, 컴퓨터 보안으로 나눈다.\*

### 3. 경영전략의 변화와 시큐리티 컨설팅

\* Fischer, Robert J. and Gion Green. Introduction to Security, sixth editon. Butterworth-Heinemann, Boston, MA, 1998, p.81.

전문직종으로서의 시큐리티 컨설팅의 발전의 토대는 급격하게 증가한 민간경호·경비산업의 성장에 기초한다. 모든 기업의 감축(downsizing), 아웃소싱(outsourcing) 그리고 기술의 진보로 인한 새로운 경영전략의 변화와 산업의 전문화는 시큐리티 분야에 있어서도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견하고 있다.

### 1) 인터넷과 시큐리티 컨설팅

인터넷이란 한마디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집합체”이며,\*\* 일종의 도서관, 잡지, 전화번호부 등으로 사용되는 웹(World Wide Web)과 전자메일, 토론방, 채팅, 어드벤처 게임 등의 각기 다른 환경들의 복합물이다.\*\*\* 인터넷에서는 지식이나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교환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지구 전체를 영역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의미한다.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콧스코어 네트워크가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1월, 15세 이상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7억 4천 700만명으로 작년 1월에 비해 10% 증가했다.

2003년 세계 인터넷 이용자 자료를 살펴보면 12개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 인구의 인터넷사용자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률에서 70%, 미국(68%), 일본(65%), 독일(60%), 영국(54%), 프랑스(43%), 중국(41%), 인도(19%), 러시아(10%)\*\*\*\*이며 인터넷 이용자중 제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적이 있는 인터넷 쇼핑비율에서 한국은 19%로 일본(17%), 싱가포르(9%), 대만(8%), 홍콩(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세계에서는 미국, 독일(28%), 영국(24%)에 이어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등장은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수정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컨설팅에 있어서도 인터넷은 정보획득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컨설팅이 가능해짐으로써 컨설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민간경호·경비업계에서도 회사별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 민간경호·경비업의 대표적 회사인 에스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견적시뮬레이션을 운용하여 시스템경비상품, 용역료와 설치공사비, 서비스종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2) 아웃소싱과 시큐리티 컨설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터넷과 형사정책정보 검색편람」, 화신문화(주), 1998, p. 13.

\*\*\* 황상민 옮김, 페트리샤 윌리스 지음, 「인터넷 심리학」, 에코라브르, 2001, p. 19.

\*\*\*\* 네이버 검색 ‘세계 인터넷 이용률’

\*\*\*\*\* <http://www.s1.co.kr>

최근 들어 기업에서 아웃소싱(Outsourcing)이란 용어의 사용이 빈번해 지고 있다. 이는 기업변혁과 구조조정을 위한 한가지 대안으로서 아웃소싱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이것을 하나의 기업성장의 기회로 채택하려는 경영전략이기도 하다.

아웃소싱을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외부(out) 자원(source)의 활용이다. 이는 모든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하여 자원을 조달하는 업무처리 방식, 즉 외부의 전문성, 시스템, 노하우를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미국 아웃소싱협회(The Outsourcing Institute)의 자료에 의하면 1996년에서 1997년 기간동안 아웃소싱은 35%증가했다고 한다. 물론 이 수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다 포함한 것이다. 달톤(Dennis Dalton)은 그의 책 「보안경영 : 성공을 위한 경영전략」에서 미국노동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경호·경비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업의 약 60%가 외부로부터 경호·경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경호·경비부분의 아웃소싱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이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운용 비용의 삭감 및 통제를 통한 핵심 사업에 대한 기업 역량의 집중과 글로벌 경제 시대의 도래에 따른 세계 수준의 경영역량에 대한 접근 및 획득으로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내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화를 꾀하고, 리엔지니어링 효과의 강화와 내부적으로 획득 불가능한 자원 또는 관리하기 어렵거나 통제 불가능한 기능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자본의 활용도를 향상시켜 기업의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고 최고의 회사경영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아웃소싱이 우리나라 경호·경비업 부문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70년대부터이다. 경호·경비업계에 있어서의 아웃소싱은 신 경영기법의 적용이라 할 수 없는 외부 입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경영방식으로 경호·경비업체와 발주하는 업체간의 계약의 형태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장하여 왔다.

우리나라 경비업법 제2조 제1항에서도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하여 타인의 위탁을 받아 타인을 위해 행하는 업무여야 하며, 사고의 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라 할지라도 자사를 위해 행하는 것은 경비업무가 아니고 「자체경비」라고 한다.\*\*\* 이와 같이 경비업은 대부분이 일반회사의 경비부문에 대한 외주로 상호 도급에 의한 계약을 통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웃소싱과 시큐리티 컨설팅의 관계는 경비업무의 전문적인 경영전략이 부족한 기업이 경비업체의 컨설팅을 통하여 상호 계약을

\* 이영균, “Supply Chain Management 와 Outsourcing을 통한 경쟁력우위 창출 전략”,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35.

\*\* John Stees, Outsourcing Security, Butterworth-Heinemann, 1998, p. 11.

\*\*\* 박병식, 「용역경비업법」, 법률출판사, 1996, p. 31.

이루어내기 위한 전략적 과정인 것이다.

최근에는 경비부문에 있어서 아웃소싱의 영역도 넓어져서 업체의 일반적 경비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행사 경비, 귀급속 호송경비, 장례식 호송 등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3) 민영화와 시큐리티 컨설팅

정부가 소유한 기업과 자산, 정부가 운영하는 활동을 민간부문으로 체계적으로 이전하는 민영화에 대한 해당 산업분야의 관심은 업계의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논의로 거론되고 있다.\*\*\*\*

민간경호·경비업에 있어서 민영화(privatization)란 공경호·경비가 민간경호·경비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며, 경찰의 고유임무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일정부문 민간경호·경비업체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이러한 민영화는 경찰의 부문만이 아니라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전체의 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힘입어 최근 민영화(privatization)에 관한 논의는 사회의 수요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제반수요를 충족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공공부문을 재고려하는 새로운 방안을 상징하게 되었다. 민영화 이론에는 먼저 경찰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경호·경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시장에서의 상호 경쟁을 보장하는 가장 효율적인 재화나 자원의 배분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경쟁을 극대화하여 완전경쟁시장의 연장선상에서 규제의 철폐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의 추진은 국가 경영 및 민간경호·경비산업의 성장은 물론 이 부문의 컨설팅업의 활성화와 세계화의 경쟁 속에서의 생존전략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 민간경비 차원에서의 민영화의 예로는 민영교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2000년 1월 28일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법령에 따라 2001년 8월 24일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제안요청을 일반에게 공고하여 일부 종교단체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선

\*\*\*\* '민영화'란 용어의 구체적 정의는 논자에 따라 다양한데, 넓은 의미의 민영화는 계약(contracting-out), 혹은 프랜차이즈(Franchising), 탈관료화(Debureaucratization), 시장프로세스를 중시하는 경쟁촉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을 뜻하나, 통상의 분석에서는 소유권의 민간이양이라는 핵심적 측면만이 민영화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박병식, '한국시큐리티업의 진단과 발전방향', 빌딩정보 통권 제151호, 1999년 11월호, pp. 88~90.

\* 서진석,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 63.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9년 12월 28일에 행형법을 개정하여 교도소 등 설치·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행형법 제4조의 2 [교도소등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진국들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탐정제도\*\*\*를 두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 업무의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추세와 탐정시장의 외국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인탐정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이 공경호·경비분야의 민영화에 따른 전문 컨설팅업의 등장은 경영의 효율화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 4. 시큐리티 컨설팅업의 시장전망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체 등록 현황은 2008년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시설경비 업체의 수는 2726개, 경비원의 수는 10만 9590명, 호송경비 업체의 수는 52개, 경비원의 수는 3048명, 신변보호 업체의 수는 416개, 경비원의 수는 1만1760명, 기계경비 업체의 수는 138개, 경비원의 수는 5000명, 특수경비 업체의 수는 55개, 경비원의 수는 6002명으로 총 3387개의 경비업체와 13만5400명의 경비원이 분포되어 있는 현황이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비업체의 영세와 경비원의 자질문제, 경비제도의 미비, 공공기관과의 상호협력에 대한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다양하고 세분화, 전문화된 경호·경비산업이 발달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여러 분야중 시큐리티 컨설팅업의 시장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비대상시설의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자문하는 시큐리티 컨설팅(경비자문)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경호·경비업체에서도 경영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경비자문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경호·경비산업에 있어서의 경비자문업은 아직 초보단계에 지나지 않으며 경비자문의 수준도 독립적이거나 독자적 영역으로서의 경비자문이 아니라 시스템구축을 위해 부수적으로 따르는 영업행위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어

① 법무부장관은 교도소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있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교도소 등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탐정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비밀의 사실을 몰래 염탐하거나 그 일을 하는 사람, 죄인을 찾는 것 혹은 그 일을 하는 사람 혹은 형사(刑事)를 뜻한다. 비밀리에 활동한다는 점에서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과 활동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란 기능을 수행하는 사적기관이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화가 되지 않아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

\*\*\*\*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의 경우 지난 1999년에 이미 공인탐정법안 초안을 작성하여 2000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 김영제, “시큐리티 컨설팅 활성화를 통한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p. 43~53.

현실적으로 업종에 대한 시장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민간경호·경비산업의 선진국인 미국에 있어서도 시큐리티 컨설팅은 80년대 이전까지 관련된 전문가들은 극히 드물었으나, 1984년 전문 시큐리티 컨설턴트 국제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 Professional Security Consultants, IAPSC)라는 자체적인 전문 협회의 설립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이 협회는 컨설턴트간 의사교류를 위한 포럼개최 뿐 아니라 시큐리티 컨설팅에 대한 정의, 특정 기준의 설정, 그리고 컨설턴트의 윤리강령\*을 만들어 자정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시큐리티 컨설턴트를 분류하면 상담 수수료로부터 주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경호·경비회사의 고용된 전문가와 경호·경비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개인의 자유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컨설턴트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경비업 부문의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것에 비해 시큐리티 컨설팅부문은 컨설턴트에게 주어지는 용역이 많아짐에 따라 증가 할 것이며, 컨설팅부문과 기계경비부문은 장비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으로 연평균 성장은 10년간 약 6%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큐리티산업에서 컨설팅은 우리나라에서도 흥미롭고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업종으로 21세기 전문직으로서의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자문하는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조언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고수익을 올림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기반사업의 하나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자의 미래의 민간경비 산업 영역에 대한 10개 분야에 대해서 요약하고자 한다.

<표 3-2> 민간경비 산업 영역 분야(10가지)에 대한 요약

영역	검정 기준
시설경비사 (국가시설, 다중이용시설)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신변보호사 (경호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호송경비사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IAPSC(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 Professional Security Consultants, 는 4개의 범주로 나누어지는 29개의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 William Cunningham and Todd Taylor, The Hallcrest Report :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1985, p. 115.



기계경비사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특수경비사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대테러전문가	생물테러, 화학테러, 건물테러, 항공테러, 사이버테러 등의 테러의 유형별, 특성별 예방, 대응 등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정보분석사	중요정보 및 첩보를 수집·분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경호경비컨설턴트	경호경비와 관련된 조언, 정보 및 제안을 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사실 탐정	민간조사, 민사상의 증거 자료 수집, 탐정의 역할 수행 능력의 유무
산업보안 전문가	기업기밀 누출 방지, 위기관리, 기업손실예방 방법 및 업무수행 능력의 유무

#### IV. 한국 경비업의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공통점에 대한 일원화 방안

현 경비업법 중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원적인 운영 때문에 민간경비업의 업무수행에 비효율적인 문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들 양 법이 독자적으로 분리운영 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양 법의 분리운영에 따른 결과로 청원경찰과 민간경호·경비의 교육훈련의 통일을 기하기가 어렵고 경호·경비업무에 있어서 지휘체계상의 통일을 기하기가 어려우며 경호·경비원의 사기 문제와 직결되는 보수의 적정화를 이룩하기 또한 어렵다. 청원경찰의 이중적인 신분구조 때문에 전체민간경호·경비원들의 신분상의 통일이 곤란하며 청원경찰들의 초기 사용에 따른 훈련부족으로 직무수행상의 능력부족 문제로 내세워 또 다른 형태의 민간경호·경비조직을 결성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제 효율적인 운영상의 방해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청원경찰법과 민간경비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부분 사항들이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가장 큰 차이점으로 청원경찰의 총기휴대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태 발생시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비업법(2005.8.4)의 목적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박준석, 민간경호 경비산업론, 백산출판사, 2007, p.238

\*\*\*\* 박주현, 민간경비실무론, 학문사, 2004, p.37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

제15조 (특수경비원의 의무) ①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③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2 (경비원 등의 의무)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8.4]

제18조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①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제3호의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2.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3. 특수경비원

③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8.4>

## 제6장 경비협회

제22조 (경비협회)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무의 연구
2. 경비원 교육·훈련 및 그 연구
3.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공제사업) ①경비협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경비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施設·事業場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事業場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개정 1980.1.4, 1999.3.31>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주재 외국기관
3. 기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하는 重要施設·事業場 또는 場所

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施設 또는 事業場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80.1.4, 2001.4.7>

제4조 (청원경찰의 배치) ①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地方警察廳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0, 1991.5.31>

②地方警察廳長은 제1항의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③地方警察廳長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76.12.31, 1991.5.31>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개정 2001.4.7>) ①請願警察은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願警察의 配置決定을 받은 者(이하 "請願主"라 한다)가 任用하되, 그 任用에 있어서는 미리 地方警察廳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0.1.4, 1991.5.31>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1.4.7>

③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58조제1항·제60조·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4.7>

청원경찰법은 경찰청 경비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비업법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령에서 본 것과 같이 허가 기준과 의무, 목적, 정의, 직무에서 청원경찰법 제 3조의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는 것이 경비업법의 제 15조 특수경비원의 의무에서 시설주 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점은 차이점으로 볼 수 있지만 공통점은 무기를 휴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경비를 하는 점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도 은행 및 국가시설 등에 청원경찰에서 특수경비원들로 대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청원경찰이 민간경비원(특수경비원)으로 대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합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점은 경찰청의 행정업무부서를 경비국 보다는 생활안전국으로 통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경비협회에서 경찰청에 이러한 문제점의 법정개정을 위한 순차적인 절차를 통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V. 결 론

본 연구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민간경비와 접목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경호법, 대테러법, 대통령 경호실법에 관련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보안과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접목을 통한 민간경비의 다양성과 세분화, 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큐리티 컨설팅 즉, 통합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경비업체의 투자와 전문분야의 양성 및 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성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목적, 의무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시민,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 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경비를 공경비의 한계를 보완하는 치안 서비스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민간 경비업체와 상호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봉사정신을 갖는 민간경비 업체들은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인식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일곱째, 경비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경비업법에서 경비협회의 임무는 단순하게 제정되어 있는데, 경비협회의 사업과 의무, 목적, 자격증 등의 영역확대를 위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민간경비산업 및 업체가 발전하고 경비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논리와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객관화된 과학적 접근에 의한 체계적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부서인 경찰청과 행정자치부의 담당자와 국회의원들에게 합리적인 통합방안 자료를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경비협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처능력이 권력의 힘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군 등의 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경찰청과 민간경비원들의 위탁제 폐지 및 교육기관제 교육 도입 등 여러 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실증적인 대립보다는 경비업종에 있는 업체

와 민간경비원들의 관리를 통합화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경찰, 경비협회, 경비업체,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기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하여 경비업법 개정과 민간경비 산업발전에 중요한 제도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상호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전국 경비원들의 이력을 파악하고, 경비협회의 분과별 위원회를 두어 이사회 구성 및 지회장을 통한 경비업체의 현황을 DB로 구축하여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업체 및 협회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산학관의 상호협력 방안을 각 분야 전문가와 국가기관의 담당자와 경비협회의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발전방안을 세미나를 통해서 통합 관리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체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비업의 개정이다. 왜냐하면 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비협회는 제 22조, 23조의 임무와 역할은 너무 미비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협회에서의 경비업체 및 경비원의 관리·감독 및 교육·시험·자격증 제도까지 경찰청에서부터의 사단법인 경비협회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경비업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김상균(2007).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타 법률과의 관계. 경찰청. pp34~35.
- 김영제(2002). “시큐리티 컨설팅 활성화를 통한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  
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43~53.
- 경찰청(2003). 경찰백서, pp.203~207.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_\_\_\_\_ 제2조.
- 공배완(2004). 「민간 경비학개론」, 한울출판사, p.253.
- 박병식(1996). 「용역경비업법」, 법률출판사, p.31.
- 박주현(2004). 민간경비실무론, 학문사, 2004, p.378.
- 박준석(2007). 민간경호 경비산업론. 백산출판사. p.238.
- 서진석(2002). “민간경비의 개념정의와 새로운 경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세기 질서  
행정, 성석 정진환교수 정년기념논문총간행위원회, p.331.
- 오경록(2002). “민간경비에 대한 의식구조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62.
- 이상원(2007).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방향. p.6
- 오선경(2000). “민간경비 역할증대에 따른 인력관리 효율과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학교 행정대학원公安행정학과, 2000, pp.17-19.
- 이영균(2000). “Supply Chain Management 와 Outsourcing을 통한 경쟁력우위 창출 전략”,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5.
- 이윤근(1996).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p.12.
- 안황권 외7(2007). 비교시큐리티 제도론. 진영사. p.347.
- 전영실(1994). “각국의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3-11, p.27.
- Drucker, Peter.(1992). "The New Society of Organiz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September-October, pp. 95-104.
- 허경미(1998).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제”, 수사연구, 11, p.5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인터넷과 형사정책정보 검색편람」, 화신문화(주), p.13.
- 황상민 옮김, 패트리샤 윌리스 지음(2001). 「인터넷 심리학」, 에코라브르, p.19.
- William Cunningham and Todd Taylor(1985). The Hallcrest Report :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p. 115.



John Stees(1998). Outsourcing Security, Butterworth-Heinemann, p. 11.

Fischer, Robert J. and Gion Green.(1998). Introduction to Security, sixth editon.  
Butterworth-Heinemann, Boston, MA, p.81.

S. P. Lab.(1992). Crime Prevention-Approaches, Practices and Evaluations, Anderson  
Publishing Co., p.11.

네이버 검색 '세계 인터넷 이용률'.

<http://www.s1.co.kr>

<http://www.moleg.go.kr>

## ABSTRACT

### **A Research on Extension Device of Korea Private Security Market**

Park, Jun-Seok

As we took a look at above , this researcher suggest following device to extend Korea's private security industry's area.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private investigation law's area grafting private security together.

Second, it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think of private security's role related key figure law, corresponding terror law,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Guard law.

Third, as a draft of a proposed law related prevention flowing out of industry techniques among industry security related law, passed , it is necessary private security's diversity, subdivision, composition through an enterprise security , and private security industry area's grafting together.

Fourth, a research about private security company's investment and professional area's bringing up as well as business's extension device should be groped for the security consulting though total system management service.

Fifth, there are no big difference education course and purpose, duty about a security police man law and security law's unification , so it is necessary to drive forward actively unification through government organization's cooperation.

Sixth, a paradigm shift should be occurred about private security service among policeman , citizen, and private security guards.

Seventh, it is considered the role of security association is important.

Lastly about a matter communication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Security Association, not only look at from an authority's angle, collecting information, corresponding ability but now it is considered to grope each other cooperation device together among organizations not only the National Police Agency but also, National Organizatio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prosecutio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Guard, Army etc.

Key Words : 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on,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